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2가단512928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나1903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2가단5129283 판결

전문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피고 1. A

2. B

3. C

4. D

5. E

변론 종결 2013. 12. 20.

판결 선고 2014. 2. 7.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0,490,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3.부터 2012. 11. 13.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1)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피고 B 명의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계좌(계좌번호 F)에 관하여

2012. 7. 11. 체결된 42,0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1)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6. 2.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피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다. (1)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피고 C 명의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계좌(계좌번호 G)에 관하여,

2011. 5. 31. 체결된 24,0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6. 1. 체결된

10,0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6. 2. 체결된 10,0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6. 3. 체결된 7,0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가.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1) 피고 A과 피고 D 사이에 피고 D 명의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계좌(계좌번호 H)에 관하여,

2011. 6. 3. 체결된 1,48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6. 7. 체결된 9,0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6. 8. 체결된 4,91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7. 1.

체결된 6,0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7. 6. 체결된 2,5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D는 원고에게 23,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피고 B, C, D가, 나머지 30%는 원고가,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7.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A]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피고 B]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1. 7. 18. 체결된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53,336,8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다.

[피고 C]

1. 주위적 청구취지

가. 피고 A과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1. 6.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피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라.

나.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1. 5. 31., 2011. 6. 1., 2011. 6. 2., 2011. 6. 3. 순차로 체결된 각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53,791,6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3의 나, 다항 기재와 같다.

[피고 D]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A과 피고 D 사이에 2011. 6. 3., 2011. 6. 7., 2011. 6. 8., 2011. 7. 1., 2011. 7. 6. 순차로 체결된 각 금전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D는 원고에게 23,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4의 나항 기재와 같다.

[피고 E]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A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1. 10.경 체결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E는 피고 A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고, 메리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각 채권을 피고 A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A과 피고 E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제1채권에 관하여 2011. 10.경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2,706,097원의 한도에서, 별지 2 목록 기재 제2채권에 관하여 2011. 9. 27.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4,835,330원의 한도에서, 각 취소한다. 피고 E는 원고에게 7,542,2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가) 원고는 2009. 4. 13.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하여 주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21.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이 소외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하여 주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4. 30.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이 소외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원금 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하여 주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제1, 2, 3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피고 A이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원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5%이다.

(2) 원고의 대위변제 (가) 피고 A은 제1, 2, 3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서 소외 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는데, 2011. 7. 14. 원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위 각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2. 2. 3. 소외 은행에게, ①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5,345,864원(= 대위변제원금 15,563,554원 - 일부 회수금 217,690원), ②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5,096,316원(= 대위변제원금 15,429,416원 - 일부 회수금 333,100원), ③ 제3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10,048,550원(= 대위변제원금 10,310,430원 - 일부 회수금 261,88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원금의 합계액 40,490,730원(= 15,345,864원 + 15,096,316원 + 10,048,5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2. 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12. 11. 13.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 A이 서울 송파구 I, 2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일식집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1. 7. 18. 임차인의 명의를 자신의 제부인 피고 B 명의로 변경하였는바, 이는 피고 A이 2011. 7. 18.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증여한 것이고, 당시 피고 A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2011. 7. 18. 금전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12. 20.까지 발생한 원고의 채권액인 53,336,8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 A이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임차인은 피고 A이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서 반환되는 임대차보증금은 피고 A이 수령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A이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서 반환받게 된 임대차보증금 42,000,000원을 2012. 7. 11. 피고 B의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계좌로 입금시켰는바, 이는 예금채권의 명의신탁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A, K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 A이 서울 송파구 1, 2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일식집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1. 7. 18. 임차인의 명의를 자신의 제부인 피고 B 명의로 변경하여, 피고 B와 임대인 L 사이에 2011. 7. 18.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2. 7. 17.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A이 피고 B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기재된 1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하려면, 객관적으로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 피고 B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피고 A이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A이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종국적으로 귀속시켜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을 더 가려볼 것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청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2012. 2. 3. 발생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2012. 7. 11.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의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계좌명의신탁과 사해행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계약 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 출연자 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9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피고 A의 부탁에 따라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계좌(계좌번호 : F, 이하 '제1명의신탁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피고 A으로 하여금 제1명의신탁계좌를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 피고 A은 2011. 7.경 이미 채무가 증대되어 지급불능상태에 빠졌고, 결국 2011. 8. 26. 파산신청을 한 사실, 피고 A은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 B로 변경한 이후에도 위 임대차목적물에서의 영업을 자신이 직접 하여 온 사실, 피고 A은 제1명의신탁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와의 거래대금의 결제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온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2012. 7. 11. 종료되자 피고 A은 임대인 L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42,000,000원을 제1명의신탁계좌로 입금받은 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하여 제1명의신탁계좌에 남아 있던 돈의 대부분을 2012. 7. 20.부터 2012. 7. 23.까지 피고 A의 아들인 M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 명의의 제1명의신탁계좌에 2012. 7. 11. 42,000,000원이 입금된 것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제1명의신탁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의 명의신탁계약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2012. 7. 11. 예금채권의 명의신탁계약으로 인하여 대내적으로는 출원자인 피고 A이 피고 B에 대하여 2012. 7. 11. 제1명의신탁계좌에 입금된 42,000,000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예금채권의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이상 금융기관이나 제3자가 피고 A에 대한 채권으로 피고 B 명의의 제1명의신탁계좌에 2012. 7. 11. 입금된 42,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던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제1명의신탁계좌에 대한 2012. 7. 11.자 42,0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은 피고 A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라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A은 위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처형인 피고 A의 부탁에 따라 제1명의신탁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일 뿐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나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제1명의신탁계좌에 관하여 2012. 7. 11. 체결된 42,0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제1명의신탁계좌에 2012. 7. 11. 입금되었던 42,000,000원이 이미 M의 계좌로 이체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1. 6. 2.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명의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이 피고 C의 계좌로, 2011. 5. 31. 24,000,000원, 2011. 6. 1. 10,000,000원, 2011. 6. 2. 10,000,000원, 2011. 6. 3. 8,150,000원을 각 이체함으로써 위 각 돈을 증여하였는바,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3. 12. 20.까지 발생한 원고의 채권액 53,791,6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가)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A과 피고 C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명의신탁계약에 기하여 피고 A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쳐준 것이므로, 피고 A과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이 피고 C에게 2011. 5. 31. 24,000,000원, 2011. 6. 1. 10,000,000원, 2011. 6. 2. 10,000,000원, 2011. 6. 3. 7,000,000원을 송금한 것이 증여계약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각 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피고 A이므로,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위 각 일자에 위 각 금전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각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먼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이 2011. 6. 2.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명의를 이전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1. 6. 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1. 6. 2.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을 더 가려볼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서 피고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1. 5. 31. 10,000,000원, 2011. 6. 1. 10,000,000원, 2011. 6. 2. 10,000,000원, 2011. 6. 3. 7,000,000원, 피고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2011. 6. 3. 1,150,000원, 피고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2011. 5. 31. 14,000,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피고 A이 피고 C에게 송금한 위 각 돈을 피고 C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위 각 돈에 대한 금전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머지 점을 더 가려볼 것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2012. 2. 3.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A과 피고 C 사이의 아래 (4)항 기재의 각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제1, 2, 3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피고 A이 2011. 6. 2. 피고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피고 A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고 2011. 7. 14. 대출금채무의 원금 변제를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피고 A과 피고 C 사이의 아래 (나)항 기재의 각 명의신탁계약의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2011. 6. 2.자 명의신탁계약

살피건대, 증인 A의 일부 증언과 피고 C이 자인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피고 A의 동생인 피고 C이 피고 A의 부탁에 따라 2011. 6. 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명의만을 이전받은 사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명의가 피고 C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피고 A은 이 사건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1. 6. 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 A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1. 6. 2. 체결된 명의신탁계약은 피고 A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은 위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② 2011. 5. 31.자, 2011. 6. 1.자, 2011. 6. 2.자, 2011. 6. 3.자 각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살피건대, 증인 A, K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11. 5. 30. 피고 A의 부탁에 따라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계좌(계좌번호 : G, 이하 '제2명의신탁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피고 A으로 하여금 제2명의신탁계좌를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 피고 A은 제2명의신탁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일식집의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등 제2명의신탁계좌를 자신의 돈 거래를 위하여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 A이 제2명의신탁계좌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거래를 하여 오면서 제2명의신탁계좌에 있던 대부분의 돈이 출금되어 2011. 12. 17. 현재 제2명의신탁계좌의 잔액은 7,215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A이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또는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위 제2명의신탁계좌로 2011. 5. 31. 24,000,000원, 2011. 6. 1. 10,000,000원, 2011. 6. 2. 10,000,000원, 2011. 6. 3. 7,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 명의의 제2명의신탁계좌에 2011. 5. 31. 24,000,000원, 2011. 6. 1. 10,000,000원, 2011. 6. 2. 10,000,000원, 2011. 6. 3. 7,000,000원이 각 입금된 것은 피고 A과 피고 C 사이의 제2명의신탁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의 명의신탁계약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 각 예금채권의 명의신탁계약으로 인하여 대내적으로는 출연자인 피고 A이 피고 C에 대하여 위 각 일자에 제2명의신탁계좌에 입금된 합계 51,000,000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예금채권의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이상 금융기관이나 제3자가 피고 A에 대한 채권으로 피고 C 명의의 제2명의신탁계좌에 입금된 합계 5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던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제2명의신탁계좌에 대하여, 2011. 5. 31. 체결된 24,0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6. 1. 체결된 10,0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6. 2. 체결된 10,0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6. 3. 체결된 7,0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은 각 피고 A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라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A은 위 각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언니인 피고 A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제2명의신탁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일 뿐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11. 6. 2. 체결된 명의신탁계약과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제2명의신탁계좌에 관하여, 2011. 5. 31. 체결된 24,0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6. 1. 체결된 10,0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6. 2. 체결된 10,0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6. 3. 체결된 7,0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은 각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A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며, 제2명의신탁계좌로 위 각 명의신탁계약에 기하여 입금되었던 합계 51,000,000원이 이미 모두 출금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가액배상으로 원고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채권액의 범위 내의 금액인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 A이 피고 D의 계좌로, 2011. 6. 3. 1,480,000원, 2011. 6. 7. 9,000,000원, 2011. 6. 8. 4,910,000원, 2011. 7. 1. 6,000,000원, 2011. 7. 6. 2,500,000원을 각 이체함으로써 위 각 돈을 증여하였는바,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23,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 A이 피고 D에게 2011. 6. 3. 1,480,000원, 2011. 6. 7. 9,000,000원, 2011. 6. 8. 4,910,000원, 2011. 7. 1. 6,000,000원, 2011. 7. 6. 2,500,000원을 송금한 것이 증여계약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각 돈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피고 A이므로, 피고 A과 피고 D 사이에 위 각 일자에 위 각 금전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각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D는 원고에게 23,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서 피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11. 6. 7. 9,000,000원, 피고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 D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2011. 6. 3. 1,480,000원, 2011. 6. 8. 4,910,000원, 피고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 D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2011. 7. 1. 6,000,000원, 2011. 7. 6. 2,500,000원이 각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A과 피고 D 사이에, 피고 A이 피고 D에게 송금한 위 각 돈을 피고 D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켜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D 사이에 위 각 돈에 대한 금전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을 더 가려볼 것 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3의 나의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2012. 2. 3.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A과 피고 D 사이의 아래 (나)항 기재의 각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제1, 2, 3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피고 A이 아래 (나)항 기재의 각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된 후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피고 A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고 2011. 7. 14.

대출금채무의 원금 변제를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피고 A과 피고 D 사이의 아래 (4)항 기재의 각 명의신탁계약의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증인 A, K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가 2011. 6. 2. 시어머니인 피고 A의 부탁에 따라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계좌(계좌번호 : H, 이하 '제3명의신탁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피고 A으로 하여금 제3명의신탁계좌를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 피고 A은 제3명의신탁계좌를 이용하여 자신의 일식집의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등 제3명의신탁계좌를 자신의 돈 거래를 위하여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 A이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또는 우리은행 또는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 D 명의의 제3명의신탁계좌로 2011. 6. 3. 1,480,000원, 2011. 6. 7. 9,000,000원, 2011. 6. 8. 4,910,000원, 2011. 7. 1. 6,000,000원, 2011. 7. 6. 2,5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 A이 제3명의신탁계좌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거래를 하여 오면서 제3명의신탁계좌로 송금된 위 각 돈이 모두 출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D 명의의 제3명의신탁계좌에 2011. 6. 3. 1,480,000원, 2011. 6. 7. 9,000,000원, 2011. 6. 8. 4,910,000원, 2011. 7. 1. 6,000,000원, 2011. 7. 6. 2,500,000원이 각 입금된 것은 피고 A과 피고 D 사이의 제3명의신탁계좌에 관한 예금채권의 명의신탁계약에 기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 각 예금채권의 명의신탁계약으로 인하여 대내적으로는 출연자인 피고 A이 피고 D에 대하여 위 각 일자에 제3명의신탁계좌에 입금된 합계 23,890,000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예금채권의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이상 금융기관이나 제3자가 피고 A에 대한 채권으로 피고 D 명의의 제3명의신탁계좌에 입금된 합계 23,890,000원의 지급을 구하거나 압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던 피고 A과 피고 D 사이에 제3명의신탁계좌에 대하여, 2011. 6. 3. 체결된 1,48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6. 7. 체결된 9,0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6. 8. 체결된 4,91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7. 1. 체결된

6,0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7. 6. 체결된 2,5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은 각 피고 A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라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A은 위 각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D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D는 시어머니인 피고 A의 부탁에 따라 제3명의신탁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일 뿐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D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D 사이에 제3명의신탁계좌에 관하여, 2011. 6. 3. 체결된 1,48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6. 7. 체결된 9,0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6. 8. 체결된 4,91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7. 1. 체결된 6,0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 2011. 7. 6. 체결된 2,500,000원의 예금채권 명의신탁계약은 각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제3명의신탁계좌로 위 각 명의신탁계약에 기하여 입금되었던 합계 23,890,000원이 이미 모두 출금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피고 D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원고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의 채권액의 범위 내의 금액인 23,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이 별지 2 목록 기재의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계약자를 자신의 딸인 피고 E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보험금해약환급금 채권을 양도하였는바, 이는 피고 A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별지 2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1. 10.경 체결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E는 피고 A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고, 메리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를 통지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별지 2 목록 기재 제1채권에 관하여 2011. 10.경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명의 변경 당시의 해약환급금인 2,706,097원의 범위 내에서, 별지 2 목록 제2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1. 9. 27.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명의 변경 당시의 해약환급금인 4,835,33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를 구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E는 원고에게 7,542,2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A이 피고 E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무배당파워Ready 운전자보험계약(증권번호 : P)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다가 2011. 10.경 자신의 딸인 피고 E에게 위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지위를 양도하여 피고 E가 그 무렵부터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사실, 피고 A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무)리빙케어종신보험계약(증권번호 : Q)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다가 2011. 9. 27. 피고 E에게 위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지위를 양도하여 피고 E가 그 무렵부터 위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피고 A이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지위를 양도할 당시 위 각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였다거나 위 각 보험회사에게 위 각 보험계약을 해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A이 피고 E에게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지위를 양도한 것을 두고, 피고 A이 위 각 보험계약의 중도해약 및 만기시 위 각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보험금 및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받게 될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 A이 피고 E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피고 A이 피고 E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은 나머지 점을 더 가려볼 것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C, D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민영

별지